

보도시점

7.5일(금) 조간

배포 2024. 7. 4.(목) 09:0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부담 완화 등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규정
- ◇ 시행령 등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0.17일)에 시행될 예정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5. ~ 8.14.)한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별도의 연체처리·채무조정·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24.1월 제정하였으며, 10.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였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①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②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③아울러,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전자문서의 송신, 수신을 중계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필요)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문서 발신자가 발신한 것만으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통지의 도달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한다.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방식과 동일 ** 보험약관 발급 방식과 동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있고, 대상주택,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하였다.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동 법에서는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예 : 대부업체)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 손금산입채권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금융권에서 통상 상각처리를 연체 1년 이후에 하는 현황을 감안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매각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하였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 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추심유예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일정 >

일시	장소	대상
24.7.9(화) 10:00	은행회관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2층 국제회의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24.7.9(화) 15:00		그 외(공공기관, 보증기관, 대부업, 채권추심회사 등)

< (참고)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별첨]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내용 등에 대한 표준양식

〈 입법예고 · 규정제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7.5일(금) ~ 2024.8.14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kimkm88@korea.kr, sojhn@korea.kr - 팩스 : 02-2100-2629

※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김경문 (02-2100-2612)



참고 1**관련 협회별 책임자 · 담당자 및 연락처**

협회	책임자	담당자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박영상 상생금융부장 (02-3705-529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이경원 소비자보호부장 (02-2011-0742)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조부제 법규제도부장 (02-397-8710)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유제상 상품지원부장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박상조 경영지원부장 (02-3702-8571)
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심용식 기획부장 (02-6710-0810)
신용정보협회	상무 기경민 (02-3775-2863)	최영삼 신용사업본부 부장 (02-3775-2861)
농협중앙회	본부장 장종환 (02-2080-5056)	조영철 여신관리국장 (02-2080-3660)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한동권 여신지원팀장 (042-720-1871)
수협중앙회	부대표 문진호 (02-2240-2150)	이옥진 상호금융본부장 (02-2240-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상무 김용배 (02-3434-7123)	김경희 상호금융여신부장 (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박재경 (02-2145-9121)	이제광 여신관리1부장 (02-2145-9410)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신속유연한 채무자 지원**[1. 채무조정 요청시 처리절차 (법 37조)]**

- (法)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
- (승)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
 - ① 통지방법/내용 :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채무조정 내용
 - ② 조정서 작성 기한 :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 ③ 채무조정 거절시 법원 회생, 신복위 채무조정을 안내
 - ④ 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 신복위, 채권추심회사*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량 없이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경우

[2. 채무조정 내부기준 (법 34조)]

- (法) 채무조정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따라야할 내부기준을 마련·시행
 - * 내부기준 포함사항 : 전담조직인력,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처리절차, 준수여부 점검평가 등
- (승)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 채무조정 전담인력 인력요건 등을 규정
 - ① 내부기준 추가 포함사항 : 채무조정 업무 의사결정 체계, 채무조정 합의후 이행관리 및 불이행시 안내에 관한 사항
 - ② 채무조정 전담인력 자격요건 : 전문성·윤리성 위해 채무조정 교육 24시간 이수(금융업 3년 이상 종사시), 신용상담사 자격증 구비

[3. 채무조정 안내 (법 32조)]

- (法)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안내·공개할 의무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개
 - CB사에 연체기록 공유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 (승) 금융회사 홈페이지·게시판에 자체·공적 채무조정을 안내
 - 자체 채무조정 상세절차 : 채무조정 요청 방법,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내용, 조정 요청서·첨부서류, 채무조정 처리 절차
 - 여타 채무조정 :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4.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법 35조)]

- (法) 채권 존부 소송 진행중,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진행시 요청 불가
- (승) 채무조정 합의해제(미이행 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 36조)]

- (法) 채무조정 서류 보완요청 불응, 채무조정 반복 요청
- (승)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6.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법 40조)]

- (승)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①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미이행
 - * 추심연락 유예 사유, 실업·무급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질병 진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경과후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실종선고, 합의해제 요청, 공적 채무조정 확정
 - ③ 변제계획 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등 발견

[7. 채권회수조치 전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전통지(법 6, 8, 11조)]

- (현행)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전 사전통지 필요(약관)
- (法)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채권회수조치 10영업일 전 채무조정요청권 사전통지, 통지 2회 반송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갈음 가능
 - 사전통지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채무조정 여부 결정)나기 전까지 채권회수조치 불가
- (승) 통지사항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내용을 규정
 - ① (통지방법) 서면 원칙.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도달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할 필요(발신주의 배제)**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방식감안, ** 보험약관 발급(수령여부 확인 의무)방식 감안
 - 통지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필요
 - 통지가 2회 이상 반송, 주소불명시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 갈음 가능
 - ② (통지내용) 공적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

[8. 주택경매신청 유예(법 8조)]

- (현행) 주담대 연체 발생에도 상환계획 수립시 6개월간 경매 신청유예
- (法·승) 실거주 주택은 연체후 일정기간 경매신청 유예토록 하고 대상주택,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
 - ① (대상주택) 전입신고하여 거주중 & 6억원 이하인 주택
 - ② (유예기간)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 유예 필요

2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9.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제한(법 7조)]

- (현행)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3%p) 부과(약관)
- (法)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동 부분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
-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은 징수 가능
- (승)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정상이익은 보존
 -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 비용 징수 가능
 - 동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

[10.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법 9조)]

- (法)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 양도계약서에 포함
 - 양도계약 체결시 이자채권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 (승)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율
 - ①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는 기관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채권
 - * 연체 1년 초과 → 상각처리(대손처리기준) → 손금산입(법인세법)
 - ② 대손처리기준을 미적용 기관* : 연체 1년 초과 &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 대부업자, 정리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파산관재인 선임회사 등

3 양도 관련 규제 : 관행적 채권매각 제한, 채무자 보호

[11. 양도 금지 채권 (법 10조)]

□ (현행)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 금지(가이드)

*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 채권존부 소송중인 채권, 채무관계 불명확한 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명의도용, 사기대출) 등

□ (法)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 금지

- ① 자체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 ② 채권 상속 여부가 미확정, 채권 존부·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

□ (승)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을 추가 규율

① 반복매각 : 세 번 이상 양도

- 반복 매각이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횟수 미산정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 공공기관 매각시

- ②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 :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에도 미교부, 명의도용 등

[12. 채권양도 내부기준 (법 13조)]

□ (현행) 금융회사는 양도 업무 수행시 내부기준 마련 필요(가이드)

* 임직원 준수사항, 양수인 평가 대상 사항, 양도대상 채권기준 등

□ (法) 채권 양도 업무 수행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내부절차를 강화, 마련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승)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 실시

- ① 운영원칙 : 여타 채권 처리방식(추심위탁, 채무조정)간 비용·편익을 비교
- ② 내부기준 포함사항 : 내부기준 점검·평가, 담당부서, 임직원 교육 등

4 추심규제 :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13. 추심 금지 채권 (법 14조)]

- (현행) 추심허용시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채권*은 추심 금지(가이드)
 - * 채무조정, 법원회생 신청, 채무자 사망,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 소멸시효 완성
- (法) 추심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을 금지
 - * ①양도 금지채권(추심할 경우 채무자 권익보호에 중대한 영향)
 - ②채권자 불명확 :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정원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 (승) 성실상환의지가 있는 채권 등은 추심을 금지
 - ① 성실상환의지 : 공·사 채무조정 확정후 이행중인 채권
 - ②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채권

[14. 추심연락 횟수 제한 (법 16조)]

- (현행)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 금지(가이드)
 - * 다만, 단순 연체안내(1일 1회 한정), 법령·가이드 등 의무상 통지시 횟수 산정에 제외
- (法)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 금지
- (승)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계산방법을 규율
 - 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사항(횡수산정시 제외)
 - 법령 등에 의한 통지, 채무자 문의·요청에 따른 답변·통지(당일 통지)
 - 독촉이 없는 연체 채권 정보에 관한 단순통지(1일 1회 제외)
 - ② 추심연락에는 해당하나, 횡수 산정시 제외하는 사항
 - 추심이 채무자에게 미도달(방문의 경우 7일에 2회 제외)
 - 채무자가 전화중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 ③ 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수 추심자의 추심횡수는 합산

[15. 추심연락의 유예 (법 17조)]

□ (法)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

□ (승) 유예기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 예외사유를 규정

① 유예기간 :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1회 연장 가능)

※ 3+3개월 설정근거 : 재난지역 선포시 건보료 연체금 징수 예외 기간이 6개월

②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

- 변제곤란 : 채무자(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의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입원, 혼인·장례(동일 사유로 인한 유예는 1회로 제한)

③ 유예 예외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① 3개월 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

② 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

③ 7일내 채무자 거주지 변경 예정, 7일 이상 변경 예상

[16.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법 18조)]

□ (法) 채무자는 특정 시간·수단으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채권추심자는 따라야 할 의무

□ (승) 특정 시간·수단 제한 요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

① 추심시 일상·사회생활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주28시간내*), 3가지 수단 제한요청 가능(전화, 방문 동시 제한 불가)

※ 28시간 설정 근거 : 하루 근로시간(8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x 7일

② 추심연락 유형 제한 유지기간 : 3개월

③ 추심 제한요청에 따라 연락할 경우 추심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①대출 목적물 처분·3자 담보 제공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 ②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확인③신고된 주소에 미거주 ④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

[17. 채권양도·추심위탁시 평가의무 (법 12, 27조)]

- (현행)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추심위탁시 양수인·수탁인의 업무수행능력, 채무자보호 정도를 평가(가이드)
- (法) 양수인·수탁인의 업무수행능력, 채무자보호 평가를 강화
 - 추심인력 규모·전문성, 민원빈도·처리, 추심 관련법 위반, 각종 내부기준 운영현황, 담보조달비율 및 기타 평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승) 양수인·수탁인 평가 사항을 추가 규정
 - 추심 관련법 : 대부업법, 신정법, 여전법 위반여부를 평가